

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2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6. 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6. 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6. 10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이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·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규제의 완화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장학생의 자격중 평균 평정점 산출방법 변경(안 제2조)
-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방법 변경(안 제4조, 제7조)
-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사유중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 변경(안 제8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·고등학교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자격, 선발 기준, 장학금 지급, 지급의 정지 등 현 실정과 불부합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안 제8조제1항1호 중 타 장학금을 받거나, 받기로 예정된 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사유에 대하여 현재 이종으로 지급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한후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※ 2000년 장학금지급

- 대상인원 : 15명(중 2명, 고 13명)
- 금 액 : 5,178천원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까지는 장학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
- 답 : 증서로 지급하였음.
- 문 : 부모가 각각 새마을 지도자, 부녀회장일 경우 이중으로 지급할 우려는 없는지
- 답 : 향후 이중 지급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추진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6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